NEW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제도 개선방안

한경택 전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1. 서 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등을 의미하는 설계용역업무는 그 투자비용이 전체 건설투자비의 2~5%에 불과하지만,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 및 사업의 수익성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설계용역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 절하되는 등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였으며, 건설부문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부문은 선진외국의 기술력에 비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시공부문은 세계 12~13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2.6%정도 해외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엔지니어링분야의 점유율은 1.6%수준으로 토목, 건축분야만 분류할 경우 0.6%수준에 그치고 있다(ENR, 2006).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되어 있는 법 · 제도의 후진성이라 할 수 있다. 설계용역 발주제도는 경쟁력 있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이에 걸맞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용역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설계용역업자 선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건설공사 수행방식 중 설계 · 시공 분리입찰(Design-Bid-Build)방식에 있어서 설계 용역업자 선정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우선 입찰참가자선정, 적격자선정 및 낙찰자선정의 프로세스로 나누어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상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실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조사 분석과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함께 선정단계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국내 설계용역 발주제도 현황과 문제점

국내 설계용역업자 선정방식은 국가계약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을 따르고 있다(표1 참조). 국가계약법은 계약의 방법과 입 · 낙찰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 사전심사, 용역기술제안, 공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계약법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격심사 기준은 대부분의 발주청이 기술이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고 있으며, 기술이행능력점수는 사업수행능력(PQ)점수 또는 기술제안(TP)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범위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계약법에는 적격심사 이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또한 국가계약법은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디자인공모방식인 건축설계경기와 건설기술공모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1〉 설계용역업자 선정방식

발주방식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낙찰자	근거법령
적격심사	PQ	PQ+가격	적격	건기법, 국계법
		PQ+TP+가격	적격	
기술 · 가격 분리입찰		PQ+TP	협상	건기법
협상에 의한 계약		PQ+TP+가격	협상	건기법, 국계법
건설기술공모		PQ(선택)+TP,설계안	수의계약	건기법, 국계법
건축설계경기		PQ(선택)+설계안	수의계약	건기법, 국계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서에 의해 일정점수이상을 얻은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입찰 전에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당해 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참여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에서 설계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전문회사, 공공건축설계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도입취지와 달리 입찰참가자 선정뿐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도 반영됨으로써 PQ의 성격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소통과성격의 기준도 아니며, 그렇다고 최종적격자 심사의 적정한 기준으로서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공업자 선정시의 PQ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맞는 입 · 낙찰방식이 자리잡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PQ는 수행능력평가 단계의 개략적 평가와 더불어 적격자 선정시에 평가해야 할 항목까지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PQ기준이 적격심사단계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항목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분야별(설계, CM, 감리, 건축)로 운용되고 있다. 현행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유사하며, 각 분야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항목만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분야별로도 당해 용역에 가장 적합한 용역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사업수행능력과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부 평가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운용과정에서 업계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해 해외설계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업은 PQ점수 확보를 위해 주로 저개발국 위주로 진출을 하고, 업체간 과당경쟁, 저가수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R&D 참여실적은 기업의 R&D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업의 R&D가 주로 단순참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업체는 기술력향상 효과는 없이 PQ점수 획득만을 위해 R&D투자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제도 도입취지는 바람직할지라도, PQ점수가 적격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비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PQ점수만을 위해 해외진출 및 R&D에 참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적격심사

설계용역업자의 선정은 당해용역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이중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해용역수행능력점수에 PQ점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술력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PQ항목은 대부분 회사의 과거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자 평가가 일부 이루어지나 그 비중이 매우 낮다. 2008년 1월부터 설계 PQ에서는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에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수가 2점 밖에 되지 않는데다 절대평가 방법을 따르고 있어 기술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는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용

역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기술제안(TP)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술제안서에는 입찰자가 용역수행계획 및 방법, 신기술 · 신공법 등 도입 계획, 설계기술 향상방안 등을 제안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기술제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그림1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인 특수공종의 용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금액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발주청은 기술적 난이도 등 필요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기술제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관적 평가로 인한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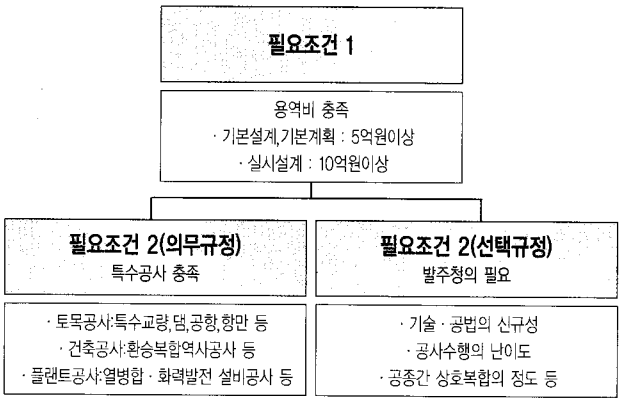

그림 1. 기술제안 평가 대상

적격심사에 있어서는 변별력이 부족한 PQ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가격점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반영비율이 다르며, 특히 평점산식도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점산식은 기본적으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에 근접할수록 높은 가격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정수준의 낙찰률을 보장하고 있다. 복수예정가격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예정가격의 편차가 크고 변수가 많아,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커지는 등 적격심사가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되고 있다.

(3) 공모방식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디자인 경쟁이 필요한 경우 건축설계경기, 건설기술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설계경기를 통한 현상공모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량 등 토목시설물은 건설기술공모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과거 SOC시설들이 디자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발주되었고, 특히 토목시설물에 대한 건설기술공모방식의 절차 ·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주목적(디자인, 특수기술 필요)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턴키방식 등 획일화된 발주방식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건설기술공모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기단축(Fast-track)을 위해서 턴키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선진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턴키방식을 고난이도 창의성이 필요한 공사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는 과거 서해대교의 사례처럼 현상공모를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다양한 발주방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공모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건축설계경기, 건설기술공모의 목적이 유사함에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상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공모와도 구분이 모호하여 발주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사실 설계공모는 건축설계경기, 건설기술공모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건축설계경기, 건설기술공모는 대상만 다를 뿐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운영절차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3. 외국 설계용역 발주제도 사례

대부분의 선진외국은 1990년대부터 가격경쟁보다는 '가치, 품질'을 기반으로 기술경쟁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인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방식을 제도화하여 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QBS방식은 업체 및 기술자의 전문성, 경험, 관리능력, 자원활용능력, 성실성 및 신뢰성과 회사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세계은행, FIDIC, ADB 등도 이를 설계컨설턴트 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컨설턴트 선정은 QBS방식과 더불어 QCBS(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QBS방식이 기술제안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회사와의 협상에 기반한 선택방식인데 비하여, QCBS방

식은 비용과 기술제안서의 품질에 기반한 선택방식으로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용역에 적용하고 있다. 두가지 방식 모두 업체에게 참여의향서를 제출받고, short list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제안서는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경험, 제안된 방법론 및 작업계획의 적합성, 핵심인력의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FIDIC은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Consultants"에서 컨설팅회사 선정방법으로 QBS와 QCBS, 목표가격(확정예산)방법(Target Price Method, Budget Method), 디자인경쟁(Design Competition), 가격협상(Price Negotiation), CBS(Cost Based Selec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QBS와 QCBS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2와 같이 프로젝트의 중요성 및 복잡성이 낮을수록 QCBS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QCBS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가격은 최대 10% 이내의 비중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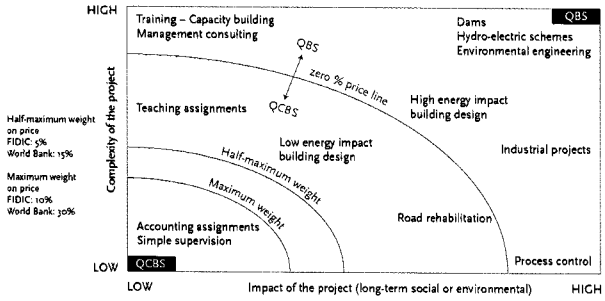

자료 : 설계경기및 기술공모방식 개선방안연구, 건교부, 2007

그림 2. FIDIC의 QBS & QCBS방식 선정 다이어그램

미국은 대부분의 DOT에서 일반적으로 QBS방식을 수행하기 위해 short list 프로세스와 경쟁적 협상(Competitive Negotiation)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DOT의 컨설턴트 선정지침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보면, RFP 작성에 의한 기술제안서 입찰방식은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지 않을 때 사용하며, 참여하는 업체수가 일정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주로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격요건(RFQ)에 의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기술제안서나 인터뷰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가 결정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부터 건설컨설턴트 선정과정에서 기술공모형 입찰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5년 4월 시행된 '품질확보법'에 따라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공사내용에 비추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경쟁참가자로부터 기술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용역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구상력, 응용력의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경쟁입찰방식과 기술제안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표준적인 설계용역은 가격경쟁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그 이외에는 기술제안방식을 권고한다.

4.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술경쟁 없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과 입찰참가자 선정방식, 입찰방식, 낙찰자 계약방식 등이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혼재되어 각각의 발주방식이 불명확하고 용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판단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이와 더불어 설계용역 발주제도를 체계화하여 당해 용역에 가장 적합한 발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표2와 같이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용역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발주방식을 선택하여, 대규모 · 고도기술용역은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고, 소규모 · 단순용역은 간소화된 평가방식을 따르게 된다.

또한 고도의 창의성 · 예술성 또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 또는 설계를 공모하여 평가하게 된다. 최종낙찰자는 기술과 가격점수를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방식(QCBS)과 기술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표2.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

규모,난이도	발주방식	입찰참가자	최종평가방식	낙찰자
小/低 ↑ ↓ 大/高	종합평가 (QCBS)	PQ	업체실적 등 간이평가	기술 + 가격평가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QBS		설계공모	기술평가 後가격협상

(1) PQ제도 개선

PQ는 입찰참가자 사전선정이라는 본래의 제도취지에 맞게 최소사전통과의 의미를 가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Q제도를 가부방식(Pass or Fail)으로만 운영하고, 이행능력중심의 개략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PQ는 사전적격심사의 의미를 가지도록 적격자 선정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입찰참가자 선정시에만 평가하는 것이다. 최종평가단계에서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따라서 현행 PQ단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업무관리능력, 기술능력 등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PQ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종단계에서 평가하게 된다.

PQ 평가항목은 설계용역업자 선정과 관계없이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도입된 항목들을 배제하고 표3과 같이 업체이행능력 중심으로 업체현황, 실적평가, 신용도로 구성해 볼 수 있다. 특히 용역업체에 대한 과거용역수행실적(성과평가)을 PQ에 반영함으로써 업체가 용역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성과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과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국토해양부가 세부평가기준을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발주청이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발주청 스스로 설계자 선정의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능력을 배양하여 당해 용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발주청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안

PQ (Pass or Fail)	업체현황	참여기술자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투자실적
	실적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
		과거용역수행실적 (용역평가점수(또는 사후평가), VE)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신용평가등급
		부실벌점

(2) 최종평가방식

PQ평가 후에 기술자평가나 기술제안평가를 통해 당해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소규모 용역은 업체실적이나 참여기술자 현황 등 간단한 사항들을 위주로 간이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용역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를 강화하도록 제안한다. 주관적인 평가는 기본적으로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 현황 및 수행범위 · 작업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책임기술자 면접을 통해 기술능력을 평가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TP)를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과 같이 금액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주관적인 평가가 확대되는 경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결과 위원별 실명으로 평가사유서 작성 · 공개, 탈락자의 해명 요구시 debriefing 실시 등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낙찰자 결정방식

낙찰자 결정은 종합평가방식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QBS방식의 경우에는 가격요소보다 기술력 우위에 입각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진외국과 같이 최종평가결과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방법 및 협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발주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QCBS방식은 종합평가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방식은 최종평가결과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종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용역의 규모(금액) 및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여, 용역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용역의 경우 최종평가점수에서 기술적 비중을 높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결 론

현재 설계용역 발주는 PQ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기술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적 및 가격경쟁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등 선진외국은 가격경쟁보다는 '가치, 품질'을 기반으로 기술경쟁에 의한 선정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시공부문에 비하여 설계부문의 기술은 선진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쳐져 있으며 해외시장 점유도 저조한 상황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설계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단편적 개선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그 기본방향은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을 활성화하고 발주방식을 발주자가 용역특성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발주방식을 용역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QCBS, QBS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PQ를 가부방식(Pass or Fail)으로 운영하여 최종평가단계에서 기술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국내 용역발주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실적 및 경력 등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용역은 단순 제조용역과 달리 창의적 · 지적 특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기술경쟁 여부에 따라 건설사업의 성과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실적이나 가격 경쟁보다 당해용역에 가장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발주방식이 설계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되어야 설계자의 능력향상 및 설계용역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설계용역 발주제도가 정착될 때 우리는 FTA 등 세계화 추세 속에서 건설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경택 e-mail : theapples@empas.com